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02-6902-8474

▶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 현재 신성장동력 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및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실업자 고용시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1인당 연 720만원) 하였으나
- 2013년부터는 지원대상 업종을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신성장동력 산업

녹색기술산업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 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⑩신소재·나노 융합, ⑪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⑫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⑬콘텐츠·소프트웨어 ⑭글로벌 헬스케어 ⑮글로벌 교육서비스 ⑯녹색금융 ⑰MICE·융합관광

** 국내복귀(U턴) 기업: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 추진배경 : 성장유망업종의 고용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성장유망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고용창출역량 지속 확대
- ▶ 주요내용
 - ①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의 10인 미만 사업장(창업 2년이내)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 ② 국내복귀(U턴) 기업
 - ③ 지원내용: 1인당 1년간 720만원(신성장동력 산업 2인, 국내복귀 기업 20인까지 지원)
- ▶ 시행일 : 2013.1.1.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02-6902-8474

-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급단위 기간을 단축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1년간 650만원을 860만원으로 인상, 6개월 단위 2회 지원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을 3개월 단위 4회로 지원기간을 개선하고,
- 취업취약계층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 추진배경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 주요내용
 - ①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②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원
- ▶ 시행일 : 2013.1. 예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2)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2012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은 최저임금 기준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이나,
- 2013년부터는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로 사회적기업의 2~3년차 지원비율이 하향됩니다.

※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 2년차 90%로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추진배경 : (예비)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3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하향 조정

▶ 주요내용

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2012년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2013년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 시행일 : 2013.1.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 2012년 11월말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 그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앞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		좌동	
장애인 근로자의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잡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별 차등화>

- ▶ 추진배경 :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확대
- ▶ 주요내용
 - 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현행과 동일
 - ② 상시근로자수가 100~300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5명을,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20명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 시행일 : 2012.12.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 ▶ 2013년부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기업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를 부담금 산정에 잘 반영하도록 부담기초액 산정기준이 더 세분화됩니다.
- 2013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3/4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2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1/2이상~3/4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4을 가산하여 월 782,5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하여 월 939,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행: 3단계〉

산정기준	부담금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1/2이상 인원	부담기초액 (1인당 월 59만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부담기초액 + 부담 기초액의 1/2 가산 (월 88만5천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월 95만7천원)

〈 변경: 4단계 〉

⇒

산정기준	부담금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3/4이상 인원	부담기초액 (1인당 월 62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달 인원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4 가산(월 782,500원)
좌동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2 가산 (월 939,000원)
좌동	최저임금액 (월 1,015,740원)

*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 한편, 2013년에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5,74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99명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확대됩니다.

※ 공공기관 · 300명 이상('11.7.1.) → 200명~299명('12.1.1) → 100명~199명('13.1.1)

☞ (참고)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

- ▶ 추진배경 : 기업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를 부담금 산정에 더 잘 반영
- ▶ 주요내용
 - ① 부담기초액 세분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인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 부과, 1/2이상~3/4미달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1/2미달인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하여 부과
 - ②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하는 대상을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로 확대 실시
 - ※ 공공기관 · 300명 이상: '11.7.1.부터, 200~299명: '12.1.1부터, 100~199명: '13.1.1부터
- ▶ 시행일 : 2013.1.1.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 ▶ 2013년부터 장애대학생에게 취업전 기업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높이고자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를 실시합니다.
- 재학·휴학중인 대학생들이 1~2개월간 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받도록 지원하며,
 - 연수생에게는 월 400,000원,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 ▶ 추진배경 : 장애대학생이 기업 현장체험을 통해 졸업 후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 마련
- ▶ 주요내용
 - ① 참여대상 : (연수생) 재학·휴학 중인 장애대학생
(연수기관) 상시 50명 이상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
 - ② 지원내용: 참여연수생에게는 연수수당 월 40만원 지급,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 지급
 - ③ 연수기간: 최소 1개월~최장 2개월
- ▶ 시행일 : 2013.1.
 - ※ 방학을 이용하여 기업연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나, 기업과 학생의 수요에 따라 연중 상시 운영 예정

특수학교(급)학생에게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2-2110-7307

- ▶ 2013년부터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이 희망일터나 적성 등을 파악하여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진입하도록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를 실시합니다.
- 특수학교(급) 3학년생 및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며,
 - 연수생에게는 1일 12,000원, 사업체보조금으로 1인당 1일 17,650원 지원합니다.
-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단발적 취업지원으로 인한 장애학생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학교에서 직업현장으로의 성공적 진입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 추진배경 : 장애학교(급)학생의 성공적인 직업현장 진입을 지원할 필요
- ▶ 주요내용
 - ① 실습대상: 고3, 전공과 재학생
 - ② 실습사업체: 일반사업체(4대보험 가입)
 - ③ 훈련기간: 3~6개월
 - ④ 지원내용: 훈련수당(1일 12,000원), 사업체 보조금(1일 1인당 17,650원)
- ▶ 시행일 : 2013.1.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 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개 지사에서 시범운영하였던 워크투게더 센터를 2013년부터 전국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제공되었으나,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수학교·학급·전공과 및 일반학급(통합반)에 재학 중인 고등부 장애학생(부모)등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평가,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학생,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워크투게더 센터 전국 확대 운영>

- ▶ 추진배경 : 교육·복지 등 관련 부처별로 실시하던 진로지도와 복지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하여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
-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 고등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 전공과 재학생 등
 - ② 서비스내용 : 직업설계 컨설팅, 직업훈련 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 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 설명회, 장애 인식개선 등
- ▶ 시행일 : 2013.1.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6902-8204)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률 요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감소하고,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액될 것이 지원금 지급요건이었으나,

- 앞으로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하고, 임금감액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률 요건 조정>

- ▶ 추진배경 : 장년의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청년의 신규채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
- ▶ 주요내용
 - 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감소로 조정
 - ② 해당 연도 임금의 감액률을 피크임금 대비 50%에서 30%로 조정
- ▶ 시행일 : 2013.1. 예정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04)

▶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지원연령 기준을 조정합니다.

- 지금까지 정년연장지원금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 앞으로 위 지원금 지원연령 기준을 58세로 통일하여,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다만, 이 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합니다.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의 지원연령기준 조정>

- ▶ 추진배경 : 현행 정년연장지원금(56세)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57세)의 지원연령기준이 달라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의 평균정년보다 낮아 이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 ▶ 주요내용 :
 - ①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년연장 지원금의 지원연령기준을 정년을 폐지 또는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도록 조정
 - ②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지원연령기준을 58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사업장으로 조정
- ▶ 시행일 : 개정시행령 공포일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12, 7319)

- ▶ 2013년부터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할 기회 부여 및 재취업을 유도하고자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인턴기간(4개월) 중 참여자 인건비(임금의 50%, 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월 65만원, 6개월)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장년 구직자에게 기업 인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 제공
- ▶ 주요내용
 - ① 참여자 : 만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
 - ② 참여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③ 지원수준 : 인턴기간 중 인턴 1인당 월 임금(약정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간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 시하는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을 추가 지원
- ▶ 시행일 : 2013.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15)

- ▶ 40세 이상 중장년층 전직희망자에 대한 전직 컨설팅, 재무·생애설계 등 제2인생 설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문을 엽니다.
-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통합·개편 및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업개요>

- ▶ 추진배경 :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15만명이상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퇴직이후에도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율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인력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전직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 전직지원: IAP수립, 심리상담, 생애설계, 건강·여가관리 등
 - ▲ 재취업지원: 이력서 작성·면접기법 지원, 취업알선 등
 - ▲ 창업지원: 창업정보제공, 창업탐방,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 ▶ 시행일 : 2013.1.1
 - ※ 서울, 경기, 충남, 전남 등 추가지정 기관은 2월 중 개소 예정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5,740원($4,860\text{원} \times 209\text{시간}$)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8,360원($4,860\text{원} \times 226\text{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시급 4,374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액 인상>

-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 12.8.1.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
- ▶ 시행일 : 2013.1. ~ 1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9)

- ▶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적용하면서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운영 중입니다.
 -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함
- 따라서 2013.1.1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팸플렛·브로셔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2-6922-0914

- ▶ 2013년부터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 ▶ 특히, 산재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에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또는 자금융자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 또한, 위험성평가 우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제도를 통해 사업장 안전 보건 감독 유예 및 산재보험료 할인(관련 법 국회 심의 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참조('13. 1. 1. 오픈 예정)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 기구 확대 조정

고용노동부 제조안전예방과(☎ 02-6922-0935)

▶ 2013년 3월 1일부터 제조 · 유통단계에서부터 산업 기계 ·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계적 결합으로 인해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제조단계에서 부터 종합적인 안전 · 보건 조치가 필요한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등 3종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확대하고,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3종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한편,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곤돌라와 방호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원심기 · 공기압축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인증: 기계 · 기구등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 · 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 · 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2013년도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유해 · 위험도 및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기계 · 기구에 대하여 제조 ·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조치 필요
- ▶ 주요내용
 - ① 안전인증 대상 확대(8종 → 11종)
 - ②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확대(3종 → 13종)
- ▶ 시행일: 2013.3.1. 이후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 02-6922-0951

▶ 2013년부터 10억원 미만 건축공사의 시스템비계 임차비용을 지원합니다.

-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교체·설치하는 경우 건설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임차료 차액 및 설비비용을 지원합니다.
-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현장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재해자 수가 전체 건설업 재해의 6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추락재해가 전체 재해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어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비계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 작업안전성 제고 및 추락재해 예방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재정지원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소규모 현장에 다발하는 추락재해 예방
- ▶ 주요 내용
 - ① 10억원 미만 건축공사의 시스템비계 임차비용 지원
 - ② 건설업체당 1,000만원 한도 지원(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교체·설치하는 경우 임차료 차액 및 설비비용)
- ▶ 시행일 : 2013.1.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3)

- ▶ 2013년부터는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안전성을 평가·공표하여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질 향상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1,900여개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매년 15,000여개소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의8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2012.1.26.)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9호)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 평가>

- ▶ 추진배경 : 석면해체·제거업체 신뢰성 확보 및 질 향상
- ▶ 주요 평가내용
 - ① 작업기준 준수여부
 - ②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여부 등
- ▶ 시행일 : 2013.1.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19)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확대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유족연금을 18세 미만까지만 지급했으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어 학업 및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존에는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남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격 변경내용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 추진배경 : 산재근로자 유족 보호를 위한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 주요내용
 - ① 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을 상향(18세 미만 → 19세 미만)
 - ② 남편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60세 이상 → 폐지)
- ▶ 시행일 : 2012.12.18.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2-2110-7223

▶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에 의하여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은 예술활동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보험료 본인 부담).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2013년도 산재보험 가입확대 내용>

▶ 추진배경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 주요내용

- ① 적용대상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
- ② 가입절차 : 예술활동 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산재보험 가입신청(보수목적의 계약서 첨부) ☞ 산재보험 승인(근로복지공단) ☞ 승인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에 성립
*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의 보험사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 시행일 : 2012.11.18.

고용노동부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2개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에 한정하여 유망창 업기업 고용지원	○ 17개업 업종(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 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 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⑩신소재·나노 융합, ⑪바 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⑫고부가 식 품산업, ⑬콘텐츠소프트웨어 ⑭글로벌 헬스케어 ⑮글로벌 교육서비스 ⑯녹색 금융 ⑰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 국내복귀(U턴)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13.1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74)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6개월 단위로 2회 지원 ○ 고용촉진지원대상이 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13.1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74)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 (’13. 1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2)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및 인턴지원기간 변경	○ (규모) 중소기업 청년 인턴 4만명 채용 ○ (인턴 지원기간) 100인 미만 기업 6개월 100인 이상 4개월	○ (규모) 5만명으로 확대 ○ (인턴 지원기간) 50인 미만 6개월, 50~99 인 4개월, 100인 이상 3개월 ☞ (참고) www.work.go.kr/intern/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13.1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2-2110-7177)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상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배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2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12년 : 월 590,000	○ '13년 기준: 월 626,000 ☞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구분별 보기>고시(12.14여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13.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의무고용 인원 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 인원 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이면 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 기초액의 1/4 가산 ☞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구분별 보기>고시(12.14여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 (‘13.1월)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 기초액의 1/2 가산	○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 기초액의 1/2 가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200명이상 고용 사업주)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3.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에서 1~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13.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 특수학교(급)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습을 받도록 지원	('13.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0)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	○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교(급), 전공과, 일반학급 장애학생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서비스내용: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설명회, 장애인식개선 등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학생,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13.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 미만으로 감소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 임금 대비 50% 이상 감액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고용보험법시행령 (‘13.1월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05)
1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 정년연장지원금 : 56세 이상 ○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57세 이상	○ 58세로 기준 통일	고용보험법시행령 (‘13.1월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04)

14.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 참여자: 만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 ○ 참여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수준: 인턴기간 중 인턴 1인당 월 임금(약정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간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 시하는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을 추가 지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 동법시행령5조 (‘13.1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12)
15. ‘중장년일자리희망 센터’ 개소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11조의2 (‘13.1.1.) ※추가지정기관은 2월중 개소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02-2110-7315)
16.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4,580원	○ 시간급 4,860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법 (‘13.1.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17.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50 이상 적용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팝플렛브로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3.1.1.)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20)

18.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10~'12년 일부지역에 시범사업 추진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주(모든 사업장) 및 평가담당자교육(100인 미만 사업장) 및 컨설팅(30명 미만 사업장) - 위험성 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관련정보자료 제공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 ☞ (참고)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http://kras.kosha.or.kr)」 ('13.1.1. 오픈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고시 ('13.1.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3,0914)
19. 안전인증 대상 확대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13.3월)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20.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확대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13.3월)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5)
21.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2013년 신규 시행	○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지원액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시행일 : 2013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시 ('13.1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1)

22.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 2013년 신규 시행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고시 제2012-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시 ('13.1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3)
23.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 제한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해당 근로자의 처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나,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남자배우자 연령 제한을 삭제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12.1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19)
24.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보험 가입 안됨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11.1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23)